



광 양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시 G 보

제37호 2026. 9. 16.(수)

입법예고

광양시 공고 제2026-1993호	「광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안 입법예고	1
광양시 공고 제2026-2024호	광양시 행정동·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0

고 시

광양시 고시 제2026-225호	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폐지 고시	14
광양시 고시 제2026-226호	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	16
광양시 고시 제2026-227호	하천점용허가 고시	18
광양시 고시 제2026-228호	하천점용허가 고시	19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6-2001호	도로지정공고	20
광양시 공고 제2026-2016호	공시송달공고	22
광양시 공고 제2026-2021호	공시송달공고	24
광양시 공고 제2026-2027호	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	2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「광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안 입법예고

「광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,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광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입법예고 대상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6년 9월 10일

광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

- 광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2. 입법취지(개정이유)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회계감사인 선임절차의 객관성,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위원회 기능 및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8조)
- 회계감사인의 자격, 선임 및 계약 기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3조)

4. 규칙제정안: [붙임2] 참조

5. 의견제출

- 「광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광양시장(기획예산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연락처

- 제출기한: 2026년 10월 1일까지

- 제출방법: 서면(직접방문)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

-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전화번호, 의견 등

- 제출기관: 광양시 기획예산실

- 주 소: (57785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, 기획예산실
- 전 화: 061-797-3211
- 전자메일: gch04546@korea.kr
- 팩 스: 061-797-2574

붙임 1. 의견서 제출서식 1부.

2. 규칙 제정안 1부.

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「광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
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연 락 처:

규정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

붙임 2

광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“지방공기업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광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·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
2. 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제3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
2.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



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지방공기업 업무 소관 4급 이상의 공무원

2. 위촉직 위원

가. 회계, 감사, 경영,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나.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

다.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, 공개모집이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.

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,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회계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,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



4.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회계감사인의 자격)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.

제10조(제안서 평가 절차) ① 지방공기업은 선임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한다.

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내용·감사범위 및 감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.

④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100점 만점(정량 30점, 정성 70점)으로 실시하며,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. 다만,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회계감사인의 선임) ① 시장은 위원회가 제10조제4항에 따라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. 다만,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선임 사실을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.

제12조(회계감사인의 계약 및 기간)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



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,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②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귀책사유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. 다만,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며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.

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.

제13조(회계감사인의 변경 등)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이 「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2026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[별표]

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(제10조제3항 관련)

1. 평가항목 및 배점

구분	평가항목 및 평가내용	배점	평점					비고
			A	B	C	D	E	
정량 평가 (30)	① 업 력 - 법인설립일(감시반의 경우 등록일)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	5	15 년 이상 (5)	10 년 이상 (4)	5년 이상 (3)	3년 이상 (2)	3년 미만 (1)	
	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-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 계사 수 (수습 공인회계사 제외)	5	20 인 이상 (5)	15 인 이상 (4)	10 인 이상 (3)	5인 이상 (2)	5인 미만 (1)	
	③ 제재 이력 -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(법인기준)	10	0건 (10)	3건 미만 (7)	6건 미만 (5)	10 건 미만 (3)	10 건 이상 (1)	
	④ 사업실적 -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	10	10 건 이상 (10)	8건 이상 (7)	6건 이상 (5)	4건 이상 (3)	4건 미만 (1)	
정성 평가 (70)	⑤ 투입인원 -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,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	15	매우 적절 (15)	적절 (13)	보통 (11)	미흡 (9)	매우 미흡 (7)	
	⑥ 투입시간 (1인당) -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,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	15	매우 적절 (15)	적절 (13)	보통 (11)	미흡 (9)	매우 미흡 (7)	
	⑦ 인력의 전문성 -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, 자질 등을 상대평가	20	매우 적절 (20)	적절 (18)	보통 (16)	미흡 (14)	매우 미흡 (12)	
	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-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-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	20	매우 적절 (20)	적절 (18)	보통 (16)	미흡 (14)	매우 미흡 (12)	
합 계		100						

2. 평가 방법

- 가. 정량평가는 지방공기업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.
- 나.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하며, 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지 않는다.
- 다. 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합계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위로 하고, 그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위로 한다. 다만, 정성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의결로 결정한다.



광양시 행정동·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「광양시 행정동·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의 중마동 마동 구역(행정리)란 중 “69통 일원”을 “69통~70통 일원”으로 하고, 같은 동 소계란 중 “69”를 “70”으로 하며, 읍면동 합계란 중 “367”을 “368”로 한다.

별표3의 중마동 69통 6~9반을 삭제한다.

별표3의 중마동 69통란 다음에 70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읍 면	통	반	관 할 구 역
중마동	70통	1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6동
중마동		2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7동
중마동		3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8동
중마동		4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9동

별표3의 중마동 소계란 중 통란의 “69”를 “70”으로 하고, 합계란 중 통란의 “147”을 “14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 1] 읍·면·동별 이·동의 명칭 및 구역			[별표 1] _____		
읍면동	법정리·동명	구역(행정리)	읍면동	법정리·동명	구역(행정리)
중마동	마 동	중마동 11통-12통, 28통-29통, 41통-44통 일원, 48통-49통, 53통 일원, 55통-57통 일원, 61통-66통 일원, 67통 일원, 69통 일원	----	----	----- ----- ----- ----- 69통-70통 일원
	소 계	69		----	70
합계		367	합계		368

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 3] 동 지역의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		[별표 3]			
동	통	반	관할구역	동	통	반	관할구역
중마동	1통~68통		(생략)		--- ~ ---		(현행과 같음)
	69통	<u>1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1동	-----	-----	-----	(현행과 같음)
		<u>2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2동			-----	(현행과 같음)
		<u>3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3동			-----	(현행과 같음)
		<u>4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4동			-----	(현행과 같음)
		<u>5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5동			-----	(현행과 같음)
		<u>6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6동			(삭제)	(삭제)
		<u>7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7동			(삭제)	(삭제)
		<u>8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8동			(삭제)	(삭제)
		<u>9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9동			(삭제)	(삭제)
중마동	<신설>	<신설>	<신설>	-----	70통	<u>1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6동
	<신설>	<신설>	<신설>			<u>2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7동
	<신설>	<신설>	<신설>			<u>3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8동
	<신설>	<신설>	<신설>			<u>4</u>	마동 1360번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109동
소계	69	347		-----	70	---	
합계	147	815		-----	148	---	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제 명 : 광양시 행정동.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성 명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개정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 고
	찬 성	반 대		

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.

〈폐지 내역〉

연번	폐지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 폐지 사유
1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용장길 207	2026. 9. 16.	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(☎ 797-3389)에 문의 또는
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9. 16.

광 양 시 장

도로명주소 폐지 대상

연번	업무 구분	도로명주소	건축물대장 말소일 (건축물멸실 확인일)	폐지 고시일	폐지 사유
1	건물번호 폐 지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용장길 207	2026. 5. 13. (2026. 9. 14.)	2026. 9. 16.	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
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9. 16.

광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88-1 외 1건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338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
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6. 9. 16.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
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
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
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
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
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 사유
계	건물번호 부여 2건					
1	건물번호 부여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88-1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칠성1길 70-5	20260916	20081001	법정리명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2	건물번호 부여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254-12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상면 상어치길 8	20260916	20081001	어치마을 윗길에서 명명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23일

광 양 시 장

가. 허가내용

하천의 명칭		광양동천(지방하천)
점용자	주소	광양시 광양읍 인서4길 11-18
	성명	천영규
점용지역	위치	옥룡면 용곡리 969-5 외 1필지 일원
	면적	약 110㎡
점용목적		토지의 점용
점용내용		단독주택 진출입로 및 농작물 경작
점용기간		당초: 2021. 4. 12. ~ 2026. 12. 31. 연장: 2027. 1. 1. ~ 2031. 12. 31.

나.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
입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(☎061-797-2735)로 문의하시기 바
랍니다.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23일

광 양 시 장

가. 허가내용

하천의 명칭		광양동천(지방하천)
점용자	주소	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74
	성명	고성주
점용지역	위치	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981-1 일원
	면적	약 10㎡
점용목적		공작물 설치
점용내용		단독주택 진출입로
점용기간		당초: 2021. 12. 15. ~ 2026. 12. 31. 연장: 2027. 1. 1. ~ 2031. 12. 31.

나.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
입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(☎061-797-2735)로 문의하시기 바
랍니다.

도 로 지 정 공 고

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11호,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.

2026. 9. 11.

광 양 시 장

1. 공 고 명: 도로지정 공고
2. 지정근거: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11호, 제45조 제1항
3. 공고기간: 2026. 9. 14. ~ 2026. 9. 28.(14일간)
4. 도로지정 공고내용

건축위치	도로위치	길이	너비	면적	소유자	이해관계인 동의여부
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82번지	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82번지	15.2m	1.05m	16㎡	정○선	동의

5. 공고방법: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
6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(☎ 061-797-287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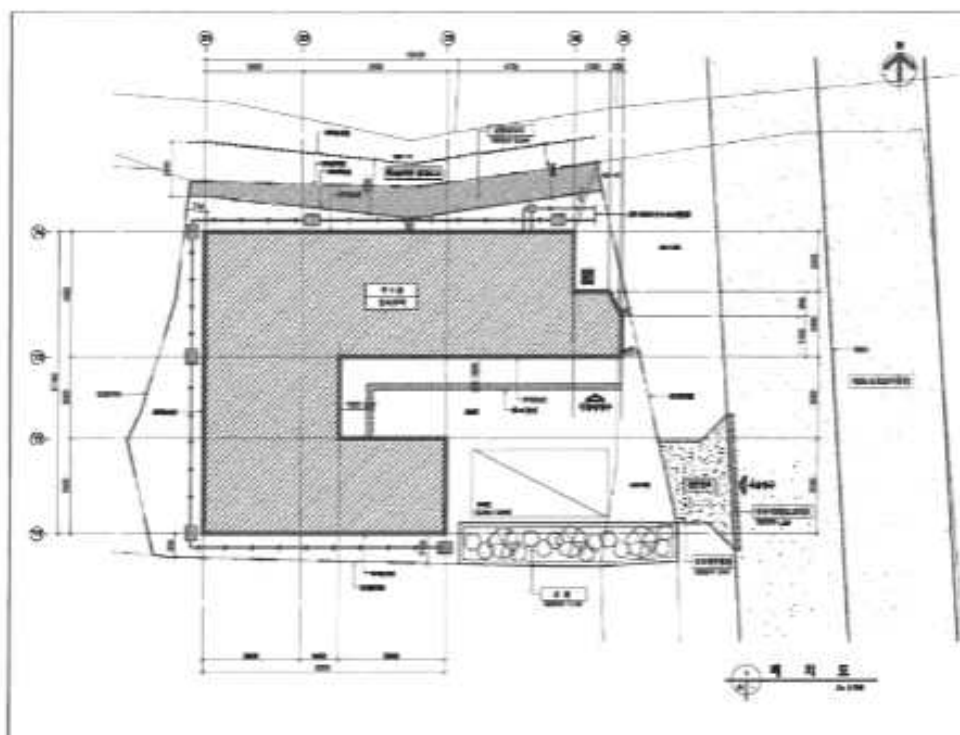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측 척 <임 의>



현황도

측 척 1 / 200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위반 의심 민원 신고에 따라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 및 동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 실시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9월 17일

광 양 시 장

- 1. 공 고 명 :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26. 9. 17. ~ 2026. 10. 1.(15일간)
- 3. 공고장소 :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- 4. 공시송달 내용

- 가. 처분의 제목: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
- 나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아래 참조
- 다. 법적근거 및 조문 :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 및 동법 제17조제1항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

연번	처분 당사자	건 축 물 소 재 지	처분내용	반 송 주 소	반송사유
1	박O화	광양시 중 동 1545-5번지	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영로 141, 102동 1202호 (광영동, 현대아파트)	폐문 부재 등
2	김O선	광양시 중 동 1643-1번지	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등6길 51, 604동 1101호(마동, 송보파인빌6차아파트)	

- 5. 유의사항
 -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(☎061)797-288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	기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건축법』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“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”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9월 17일

광 양 시 장

1. 공 고 명 :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9. 17. ~ 2026. 10. 1.(15일간)
3. 공고장소 :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공시송달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: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

나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아래 참조

다. 법적근거 및 조문 : 「건축법」 제79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

건 축 물 소 재 지	처 분 원 인 (위 반 내 용)	처분내용	처분 당사자	반 송 주 소	반송사유
광양시 중동 1603-1번지	「건축법」 제14조 위반 가. 제2종근린생활시설(수리점-창고) 경량철골구조 1층 26.24㎡ 나.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-처마) 경량철골구조 4층 10.0㎡ 다. 조경훼손 13.885㎡	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	이O정, 전O정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눈소10길 16, 108동 2403호(마동, 광양외주지교 중흥 S-클래스)	폐문 부재 등

5. 유의사항

-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(☎061)797-288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	기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

「태인 도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」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6. 9. 30.(수)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)

2026. 9. 16.



1. 사업시행자 : 광양시장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
- 명칭 : 태인 도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

3. 수용재결 신청대상

○ 토지

소 재 지		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	관 계 인			비 고
동(읍)	리	지번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명	종류	
태인		1322-2	대	96	96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강*자				
태인		1322-2	대	96	96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김*석				

합계		1필지			96㎡		2명		-명		
----	--	-----	--	--	-----	--	----	--	----	--	--

○ 물건

물건 소재지	물건의 종 류	구조 및 규 격	수량	소 유 자		관 계 인		비고
				주 소	성 명	주소	성명	
광양시 태인동 1322-1	창고	철제 함석지붕 2.8*3.2	8.96㎡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강*자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	동산이전비	조업기구 일체	1식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강*자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식당 및 주택	목조 강판지붕	70.74㎡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강*자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화장실	조적조 스테지붕 1*1	1㎡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강*자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창고1	조적조 스테지붕 1.8*2.5	4.5㎡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강*자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창고2	조적조 스테지붕 2*3.8	7.6㎡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강*자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차양	목조 스테지붕(5*4)+(2 *3)	26㎡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강*자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동산이전비	어구 등	1식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강*자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꾸지뽕	r10, h4	2주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강*자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동산이전비추 가분	냉장고, 주방집기, 선박 모터 및 의장품, 어구 등 내부 집기 일체	1식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강*자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	창고	철제 함석지붕 2.8*3.2	8.96㎡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김*석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	동산이전비	조업기구 일체	1식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김*석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식당 및 주택	목조 강판지붕	70.74㎡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김*석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화장실	조적조 스테지붕 1*1	1㎡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김*석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창고1	조적조 스테지붕 1.8*2.5	4.5㎡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김*석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창고2	조적조 스테지붕 2*3.8	7.6㎡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김*석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차양	목조 스테지붕(5*4)+(2 *3)	26㎡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김*석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동산이전비	어구 등	1식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김*석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꾸지뽕	r10, h4	2주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김*석			
광양시 태인동 1322-1, 1322-2	동산이전비추 가분	냉장고, 주방집기, 선박 모터 및 의장품, 어구 등 내부 집기 일체	1식 × 1/2	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*	김*석			
합 계		10건			2명			

4. 열람장소 : 광양시청 게시판(누리집)
5.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: 2026. 9. 16. ~ 2026. 9. 30.(15일간)
6. 의견서 제출처 : 광양시청 안전과(광양시 시청로 33)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과(☎ 061-797-226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끝.

의견서		
☐ 사업명 : 태인 도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		
1. 제목		
2. 당사자	성명(명칭)	
	소재지	
3. 이의 내용		
4. 기타		
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 합니다. 2026. . . 이의서 제출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 주소 : 전화번호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		
비고	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	